

상지대학교 발전위원회 규정

제정 2019. 05. 14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고 한다)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상지대학교 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대학의 발전계획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
2. 대학의 지역 공헌과 관련한 제반 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
3. 대학의 발전기금 유치 등 재정기여에 관한 사항
4. 기타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

제3조(구성 및 임기)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동의하는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)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5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상임공동위원장은 상지대학교 총장으로 한다.
2.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, 국회의원, 지방의회 의장, 지역 공공기관의 장
3. 상지대학교 동문 및 대학 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·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의 구성원
5. 제1호부터 제4호 외 필요한 공동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상임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, 유고 시 제4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상임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제2조의 각 호 사항에 관한 자문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운영위원은 상임공동위원장이 공동위원장과 협의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- ④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7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활동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④ 분과위원회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는 대외협력처에서 주관하며 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제9조(경비지급)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(기획예산팀-254, 2019.05.14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